

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표 3의4] <신설 2026. 4. 28.>

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(제30조의11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- 라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(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 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 - 4) 위반행위의 기간, 내용, 정도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5) 그 밖에 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	인증취소	
나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	법 제22조의11제4항제2호	인증취소	

지하지 않은 경우		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3호	인증취소	
라.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4호	경고	인증취소
마. 법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	경고	인증취소
바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	인증취소	